#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0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박용갑·장종태·황정아

손명수 · 서미화 · 한민수

조인철 · 정을호 · 권칠승

소병훈 • 이병진 • 박상혁

강유정 · 서삼석 · 박희승

허성무・황 희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인 2024년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후, 불과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학교의 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했어야 하나, 현행법상 건강증진기본계획과 건강증진 시행계획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건강증진계획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학생건강증진"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을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학생"을 각각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학생건강증진"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의"를 "학생 및 교직원의"로, "학생건 강증진"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정신건강증진계획"으로 하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학생"을 각각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 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 <u>학생건강증진</u> 기본계획	제2조의3(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
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	<u>진</u>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은 5년마다 <u>학생</u> 의 신체 및 정	학생 및
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교직원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lt;단서</u>	
<u>신설&gt;</u>	<u>다만, 교육부장</u>
	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
	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학생</u> 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	1. <u>학생 및 교직원</u>
본방향 및 목표	
2. <u>학생</u> 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	2. <u>학생 및 교직원</u>
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ユ	밖에	<u>학생</u> 의	건강증진을
9	위하	여 필	요한 사	항

# ③ • ④ (생 략)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u>학생건강증진계</u>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u>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u>을 수립 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 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 게 자문을 할 수 있다.

3 <u>학생 및 교직원</u>
_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u>증진</u>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학생 및 교직원의
<u>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생 및 교직원</u>
건강증진계획
<b>4</b>
학생 및 교직원 정신건강증진
계획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선행과 같음)
  -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u>학생</u>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u>학생</u>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생략)
  - 해당 <u>학생</u>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3. 해당 <u>학생</u>에 대한 전문상담 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4. 그 밖에 <u>학생</u>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④ (생 략)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u>학생 및 교직원</u>
<u>학생</u>
및 교직원
<u>.</u>
1. (현행과 같음)
2 <u>학생 및 교직원</u>
3 <u>학생 및 교직원</u>
4 <u>학생 및 교직원</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정신
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

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 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 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